

특정업체 하도급 추천 등 비위혐의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

□ 조사개요

- 조사대상: 국립아시아문화전당 °°°°°과장 ●●●
- 조사기간: 2016. 12. 5.~12. 7.
- 조사인원: ○○○ 외 1명
- 조사내용
 - 문화전당 각종 공사 관련 특정업체 하도급 및 수의계약 등 부당요구
 -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부적정 등

□ 조사결과

① 특정업체 하도급 부당요구

- 문화전당 「조류비래 시설 및 낙하물 방지시설 공사」
 - 문화전당 원청업체인 (주)A에 설계변경(3차례)을 지시하여 실정보고서 접수 및 승인한 후 지인 업체인 'B'(대표 ○●○)를 동 공사 하도급으로 추천하여 수주(2억 4,283만원)하게 함
 - 문화전당 「외곽주차장 건립 공사」
 - 원청업체인 (주)C에 본인이 알고 있는 'D'을 토목공사 하도급으로 추천하여 수주(25억 4,400만원)하게 함
- ☞ 발주처 공무원이 특정업체를 하도급하도록 요구한 것은 「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행동강령」 제8조(특혜의 배제) 및 제13조(이권개입 등의 금지) 위반

② 특정업체 수의계약 등 부당요구

○ 문화전당 「사인물 제작·설치 공사」

- 2015. 8월초 문화전당 부분개관(2015.9.4.) 및 전면개관(2015.11.25.)이 확정됨에 따라 (주)E 및 'B'에 계약법상 근거도 없이 선공사를 실시토록 하고, 담당자에게 조달청 입찰 및 선정(2015.12.22.)된 (주)F(14억 6,000만원) 과 (주)E(3억 7,440만원) 및 'B'(5억 9,825만원)와의 계약체결 및 선공사비를 중재 및 조율하여 지급토록 지시

○ 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 「조류비래 시설」 공사(850만원)를 (주)G(대표 ●○●)*과 수의계약토록 하여 공사를 실시함

* 지인 ◎●◎의 배우자이며, 2015. 9. 22. 설립

○ 문화전당 「가구형 사이니지 및 사슴동산 장식조명 설치」

- 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전면 '가구형 사이니지' 및 문화광장 중앙 '사슴동산 장식조명' 설치를 (주)G이 맡게 하고, 아시아 문화원에 수의계약 및 대금(5,027만원)을 지급하도록 지시
- 아시아문화원이 '가구형 사이니지'(4,389만원) 설치와 관련, (주)G과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수의계약이 가능한 여성기업체인 (주)E를 소개해 주고 수의계약하게 하여 (주)G의 설치 대금을 지급토록 지시

☞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5조(계약의 원칙) 및 제6조(계약사무의 위임·위탁), 「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행동강령」 제8조(특혜의 배제) 및 제13조(이권개입 등의 금지) 위반

③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부적정

- 2013. 2. 13.부터 2016. 11. 21.까지 직무관련자인 (주)G 대표 ●○● (◎●◎ 배우자) 및 실장 ◎●◎과 총20차례에 걸쳐 6,755만원을 송금하고, 6,810만원을 돌려 받는 등 금전거래를 함

- 2016. 9. 21. 평택시 소재 토지를 공동매입*하면서 부족한 매입자금 1억 8천만원을 대출(농협 ㉸㉸㉸ 지점) 받아, 직무관련자 (주)C 현장소장 ◆○◆의 부족자금 5천만원을 대납해 주고 매월 126,680원 이자를 받고 있음

* 총 6억 8천만원(●●● 2억 6,200만원, ◆○◆ 2억원, ●○● 2억 1,800만원)

☞ 「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행동강령」 제19조(금전의 차용 금지 등) 위반

□ 조치계획

- 타인의 권리침해, 회계질서 문란, 부당한 영향력 등을 행사한 것으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56조 규정 위반으로 판단되어 ‘징계’ (중징계) 요구

※ 조사과정에서 인지(전화 녹음)한 (주)C(원청)와 D(하청)간 리베이트(2억원) 의혹(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위반)에 대해 수사의뢰